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20. 11. 20.(금) / 총 3 (본문2, 붙임1)
담당 부서	항공안전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유경수, 사무관 박주환, 주무관 신정옥 • ☎ (044) 201-4244, 4245, 4246
	항공운항과	담당자	• 과장 오성운, 사무관 최진호, 사무관 조종관, 사무관 박태규 • ☎ (044) 201-4259, 4312, 4786, 4311
	항공교통과	담당자	• 과장 유경수, 사무관 권혁진, 주무관 조명준 • ☎ (044) 201-4294, 4192, 4193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국토부,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36.6억 원 부과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1월 20일(금) 「행정처분심의위원회」를 개최하여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.6억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.

* 제주항공 22.6억, 대한항공 8억, 아시아나항공 2억, 이스타항공 4억

-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(2건), 관제지시 준수 의무 등 운항기술기준 위반(4건), 부적절한 항공기 조작 등 운항·정비규정 위반(5건) 등 1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과 절차에 따라 항공사 및 관련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·의결하였다. (안전별 심의결과 : 붙임 참조)
-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.
- 아울러,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「항공업 긴급 지원방안(‘20.2.17.)」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납부가 유예되며,

- 5억 원 이상의 과징금의 경우에는 최근 개정된 「항공안전법」 시행령 (‘20.11.3.)에 따라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연기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코로나-19로 인한 항공사 경영악화, 항공사 M&A 등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,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하는 등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 안전정책과 박주환 사무관(☎ 044-201-4245), 항공운항과 조종관 사무관(☎ 4786), 항공교통과 권혁진 사무관(☎ 419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상정 안건 (처분대상)	심 의 결 과			비 고
	과징금 (억 원)	운항정지 (일)	자격정지 (일)	
① 제주항공 허가 없이 위험물 운송				
• 항공사	12	-	-	▪ 같은 위반행위가 2회이상 연속 발생한 점 등 고려 기중 처분
② 제주항공 162편 관제지시(고도) 위반				
• 항공사	미처분	-	-	▪ 경미한 위반으로 1년 내 동일위반행위가 없어 미처분 (미처분 근거: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3)
• 조종사1	-	-	30	▪ 원안 처분(법 제77조제2항 위반)
• 조종사2	-	-	30	▪ 원안 처분(법 제77조제2항 위반)
③ 제주항공 4604편 부적절한 항공기 장비 조작				
• 항공사	4	-	-	▪ 원안 처분(법 제93조제7항 위반)
• 조종사	-	-	30	▪ 원안 처분(법 제93조제7항 위반)
④ 제주항공 207편 자동항법장치 고장관련 운항규정 미준수				
• 항공사	6.6	-	-	▪ 하나의 비행편에서 2개 위반행위 발생으로 기중 처분
• 조종사	-	-	미처분	▪ 비상착륙절차 시행에 관한 기장의 재량행위를 인정 미처분
• 운항관리사	-	-	30	▪ 원안 처분(법 제93조제7항 위반)
⑤ 대한항공 001편 인천공항 관제탑 허가 없이 무단이륙				
• 항공사	미처분	-	-	▪ 경미한 위반으로 1년 내 동일위반행위가 없어 미처분 (미처분 근거: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3) ※ 관련 조종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기처분
⑥ 대한항공 승객수하물 처리규정 미준수				
• 항공사	8	-	-	▪ 위반사실을 인지하고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기중 처분
⑦ 아시아나 321편 장비품 수리교범 미준수				
• 항공사	-	-	-	▪ (속행) 수리교범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보완조사 필요
⑧ 아시아나 8708편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 착륙				
• 항공사	미처분	-	-	▪ 경미한 위반으로 1년 내 동일위반행위가 없어 미처분 (미처분 근거: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3)
• 조종사1	-	-	30	▪ 원안 처분(법 제77조제2항 위반)
• 조종사2	-	-	30	▪ 원안 처분(법 제77조제2항 위반)
⑨ 아시아나8147편 뒤로 밀기 중 부적절한 운항절차 수행				
• 항공사	2	-	-	▪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감경
• 조종사	-	-	15	▪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감경
⑩ 진에어 유효기간 초과 구급의료용품 탑재				
• 항공사	미처분	-	-	▪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미사항 위반 건으로 자율보고를 한 사실 등을 고려 미처분(근거: 법 61조)
• 정비사	-	-	미처분	▪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미사항 위반 건으로 자율보고를 한 사실 등을 고려 미처분 (근거: 법 61조)
⑪ 이스타항공 904편 선회접근 중 운항규정 위반				
• 항공사	4	-	-	▪ 원안 처분(법 제93조제7항 위반)
• 조종사1	-	-	30	▪ 원안 처분(법 제93조제7항 위반)
• 조종사2	-	-	30	▪ 원안 처분(법 제93조제7항 위반)